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예고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 1. 20.

담양군의회 의장



1. 규칙명 :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0.~1. 27.(8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경우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의무)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담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담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